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60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신청 내용	[]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, 시장 개척, 정보 제공, 사업 컨설팅 등
	[]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 설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
	[]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
	총사업비: 백만원
	보조금 신청금액: 백만원, 자부담금: 백만원, 융자금: 백만원, 기타: 백만원
	사업기간

지원금 입금 계좌번호	(예금기관명)	(계좌번호)
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

이
 고
 도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. 사업계획서 2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확인증(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(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(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. 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7.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입금계좌확인정보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임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심사/지원여부 심사 → 결정 → 결과 통보

신청인 처리기관: 산림청 ·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